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9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고동진·박준태·서일준

이헌승 • 박정훈 • 최수진

엄태영 • 구자근 • 김형동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 (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 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 라.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

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마.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지역당후원회를 추가 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바.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지역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 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아.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 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78호) 및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당의 당비의 자체적 사용)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 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1억 5천만원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 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당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된 중앙당"을 "등록된 중앙당· ·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당은 제외한다"를 "중앙당 및 지역당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당군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도당에"를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 당에"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당후원 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를 "중앙당후원회(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을 "중앙당·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u> | 제5조의2(지역당의 당비의 자체 |
| | 적 사용) 지역당은 해당 정당 |
| | 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 |
| | 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
| |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 |
| | 로 사용할 수 있다. |
|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 | |
| 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 |
|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 |
| 수 있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의2.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 |
| | 원회를 포함한다)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 2 |
| 연간(대통령후보자등 • 대통령 | |
| 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 | |
| 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 | |
| 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 | |
| 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 |
|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 |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
 각 500만원
 가. (생 략)
 <<u>신</u> 설>

나. ~ 바.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 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 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

| 1. (현행과 같음) |
|---|
| 2 |
| |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 |
| 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 |
| |
| 에는 합하여 500만원) |
| <u>다.</u> ~ <u>사</u> . (현행 나목부터 |
| 바목까지와 같음)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0 (187 E 1) |
| 제19ス(호의히이 ㅁ그.키브하ㄷ) |
|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
|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 6. (생략) ② ~ ④ (생략)

-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2. (생략)
 -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앙</u> 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 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 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 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 원회

| <u>.</u> |
|-------------------|
| |
| 1. (현행과 같음) |
| 1의2.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 |
| 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
| 후원금을 합하여 1억 5천만원 |
| 2.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
|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3 |
| J. |
| |
| <u>중앙</u> |
| 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 |
| 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 |
| 회의원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 |
| 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
| |
| 및 지역당후원회 |

②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 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 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 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 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 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 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 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 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 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 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 •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 예비후보자 • 국회의원예비후보 자 ·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
| |
| |
| |
| |
| |
| |
| |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
|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
| |
| |
| |
| 등록된 중앙당· |
| 지역당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후보자 ·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 · 지방자 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 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 지방의 회의원후보자후원회 · 지방자치 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 후원회 ·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후원회 · 지역당후원회-----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 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 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 잔여재산 처분 등) ①-----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

| 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 |
|---------------------|-----------------------|
|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 | |
| (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 | |
| 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 |
|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 | 1 <u>중앙당(중</u> |
| 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 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
| <u>다)</u> 또는 당원인 경우 | <u>다)ㆍ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u> |
|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 | 위원회를 포함한다) |
|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 | |
| 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 |
|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
| 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 |
| 를 둔 경우, 후원회를 둔 대통 | |
| 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 | |
| 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 | |
| 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 |
| 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 | |
| 회 ·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 |
| 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 | |
| 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 | |
| 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 |
|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 |
|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 | |
| 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 |
|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

②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 외한다)가 후원회를 둘 수 있 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 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 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 에 의한 수입ㆍ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 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 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 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 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 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 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 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저 (생 략)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 2 | - <u>중앙당</u> | 및 |
|-----------------|--------------------|----------|
| 지역당은 제외한다 | <u>}</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중</u> |
| <u>앙당창당준비위원</u> | 회가 중 | 중앙당 |
| 으로 또는 지역당 |) 창당준 ^E | 미위원 |
| 회가 지역당으로 | | |
| | | |
| | | |
| | • | |
| ③ ~ ⑦ (현행과 | 같음) | |
| 128조(보조금의 용 | 도제한 등 | ē) (1) |
| (현행과 같음)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10 이상은 <u>시·도당에</u>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6. (생략)
- ③·④ (생 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1. ~ 4. (생 략)
-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

| <u>시·노당에, 100</u> |
|-------------------|
| 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
| |
| |
| |
| |
| |
| |
| |
| |
| |
| 1.~ 6. (현행과 같음)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5 |
| |
| |
| |
| |
| |
| |
| 보조금의 2배에 상당 |

는 금액

-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 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후원회를 둔 <u>중앙당창</u> 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 2. ~ 6.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 ②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 2. (생략)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3.

| 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 |
|---------------------------------------|
| 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 |
| 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
| 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중앙당창 |
| 당준비위원회 · 지역당창당준 |
| 비위원회 |
| |
| |
| O C (청체기 가 O) |
| 2.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 |
| 행과 같음) |
| ②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

- 다) 및 <u>시·도당</u>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 ·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 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④ (생 략)
-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 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 1. 정당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 (<u>시·도당</u>의 경우에는 1월 3 1일)까지

| <u>시·노낭 및 지역당</u> - |
|---------------------|
| |
| |
| |
| |
| |
| ③ |
| <u> </u> |
| <u>·도당 및 지역당</u>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 ④ (현행과 같음) |
| 제40조(회계보고) ① |
| |
| |
| |
| |
| |
| |
| |
| |
| 1 |
| 1 |
| 가 |
| |
| |
| |
| |
| |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

-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 2. (생략)
-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 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 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u>\lambda</u> |
| <u>•도당 및 지역당</u> |
| 다 |
| |
| |
| |
| <u>시·도당</u> |
| <u>및 지역당</u> |
| |
| / 키 케 ㅋ ㅋ ㅇ \ |

- 2. (현행과 같음)
-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 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 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가.·나. (생 략)

4. •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후원회를 둔 <u>중앙당창당준비</u> 위원회가 소멸한 때
- 3. ~ 5. (생략)
- ③ (생 략)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 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6. 7.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
| 2 <u>중앙당창당준비</u> |
| 위원회 또는 지역당창당준비 |
| 위원회 |
| 3. ~ 5.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
| 4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5 |
| |
| <u>중앙당·지역당</u> |
| 0 0 0 7 1 - 1 0 |
| |
| |
| C 및 (원웨기 기호) |
| 6. • 7. (현행과 같음) |